https://doi.org/10.18856/jpn.2026.32.3.005

가족 현실을 읽게 하는 소설
- 1963년 『조선일보』 기획 연재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 연구

권민자*

1. 서론: 1960년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 문제의 공론화
2.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의 구성 원리
3.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의 독해 방식
4. 결론: 새로운 가족 질서 속의 부부

국문초록

1963년 『조선일보』에 총 20회 연재된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은 소설을 매개로 가족 문제를 읽고 해석하도록 조직된 신문 기획이었다. 이 연재는 한국 소설 작품을 법률 상담, 판결문, 통계, 사건 기사 등 현실 자료와 병치함으로써 부부 갈등을 개인적 경험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판별되고 해석되어야 할 문제로 제시한다.

본고는 연재 각 회차에서 반복되는 배열 방식과 규범적 진술을 분석 단위로 삼아 가족법 시행 이후의 제도적 변화가 신문 연재의 편집 구조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호출되고 해석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식민지기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는 소설들이 1963년의 가족 현실을 읽는 해석의 준거로 재배치되고, 이 과정에서 작품의 의미가 동시대의 가족 문제와 규범에

*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www.kci.go.kr

따라 선택되고 전환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가족 갈등이 법적·사회적 문제로 제시되면서도 그 해결은 부부의 이해와 책임, 감정과 태도의 조정으로 제시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1960년대 초 신문 매체가 소설을 매개로 가족 현실을 읽는 독해의 틀을 조직하고, 소설을 사회적 판단의 준거로 재배치한 편집적 작동 방식을 규명한다.

(주제어: 가족법, 부부, 신문 연재, 문학의 사회적 기능, 독해)

1. 서론: 1960년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 문제의 공론화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가족 질서를 법적으로 재편하려는 제도적 전환을 표방했다.[1] 이 개정은 여성에게 독립적인 법적 인격을 부여하고 전통적인 가부장 질서를 완화하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해방 이후 가족 제도의 근대화를 향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되어 왔다. 『경향신문』은 1958년을 정리하며 민법 제정이 여성 권익을 제도적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냈음을 강조하였고, 여성의 사회적 대우 향상이 사회 전반의 인권과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2] 이태영, 민병훈 등 법률가들은 언론을 통해 구민법과 신민법의 차이를 비교·설명하면서 신민법이 여성의 법적 지위에 가져온 변화와 그 사회적 의의를 대중적으로 해설하였다.[3] 그러나

1) 윤후정·신인령, 『법여성학: 평등권과 여성』, 제3개정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97쪽.

2) 〈整理 1958年 여성〉, 『경향신문』, 1958.12.20., 4면.

www.kci.go.kr

이러한 법적 변화가 생활 규범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조정이 필요했다. 법의 변화와 관습적 질서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했으며, 이는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1959년 민법 개정을 다룬 기사들은 개정이 여성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평가하면서도 일상에 잔존한 성별 불균형과 가족 내부의 권력 구조는 쉽게 해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4)]

1960년대 초반, 가족법을 둘러싼 논의는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1962년 7월 YWCA「유엔 세미나」보고 강연회에서는 법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여전히 차별적 지위에 놓여 있음을 진단하면서 친권·임금 불평등·가정재판소 설치 등을 일상적 규범과 직결된 쟁점으로 논의하였다.[5)] 또한 1963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의 조사에서는 가족법 시행 이후 가정 분위기가 변화했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함께 나타나 제도의 변화가 생활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6)] 1957년부터 1968년까지 여성 잡지『여원』에 연재된 이태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코너「법률상의」는 혼인, 이혼, 재산, 상속 등 결혼 생활의 핵심 문제를 상담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가족법 이후의 부부 문제를 생활의 차원으로 옮겨 놓았다.[7)] 이러한 논의는 가족법 시행 이후 가족 문

3) 민병훈,〈女性의 法的지위와 權利〉,『동아일보』, 1958.7.12., 4면; 이태영,〈新民法과 女性의 地位〉,『조선일보』, 1958.12.28., 2면.

4) 이태영,「女性 自身을 爲하는 길」,『조선일보』, 1959.5.18., 4면; 문책,〈14년과 女性 해방〉,『동아일보』, 1959.8.15., 4면;〈새 民法과 女性의 地位 ①〉,『조선일보』, 1959.11.29., 4면;〈새 民法과 女性의 地位 ②〉,『조선일보』, 1959.12.6., 4면;〈家庭法律常識 새 民法과 女性〉,『조선일보』, 1959.12.12., 4면.

5)〈民法上의 女性 地位〉,『동아일보』, 1962.7.20., 4면.

6)〈變해가는 家族制度 慶熙大 法大의 調査 결과〉,『동아일보』, 1963.11.27., 6면.

7) 홍순애·김연숙,「1950년대 여성잡지『여원』의 가족법 담론과 젠더적 법의식」,『여성문학연구』제6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209-247쪽.

www.kci.go.kr

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식 자체가 법률의 해설을 넘어 다양한 현실 사례와 함께 구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는 민법 개정의 제도사적 의미와 여성의 법적 지위 변화에 주목해 왔다.[8] 한편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한 매체 연구는 인쇄 매체가 대중의 인식과 판단을 형성하는 사회적 장으로 작동해 왔음을 보여주었다.[9] 특히 신문소설의 연재 방식과 독자 형성, 문학장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문이라는 매체와 문학 작품의 생산·유통·수용 간의 관계를 밝혀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족법 이후의 가족 문제가 신문 지면에서 어떠한 자료와 서술 방식을 통해 공론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 현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의 관심이 제도적 변화와 가족 담론의 내용, 문학과 매체의 관계에 놓이면서, 신문 지면에서 서로 다른 자료가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구성하는 과정이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법 이후의 가족 담론을 살피기 위해서는

8) 대표적 연구는 김금남, 「한국 여성운동의 주기별 조직 연대에 관한 연구: 가족법개정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1; 안경희,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6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73-128쪽.

9) 대표적 연구는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0집, 상허학회, 2010, 397-454쪽; 박용규·류지석, 「1960년대의 신문 독자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7권 5호, 한국언론학회, 2013, 396-422쪽; 김연숙, 「대중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개인관계의 서사: 1950년대 후반 '독자 사교란' 기획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2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6, 39-69쪽; 김연숙, 「전후 대중 담론에 나타난 관계지향의 욕망과 친밀성의 재구성: 1950년대 대중잡지의 '독자 사교란'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94호, 국어국문학회, 2021, 193-224쪽; 이봉범, 『전향, 순수, 전후, 참여: 대한민국 문학의 형성과 매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3.

www.kci.go.kr

신문과 여성 잡지에 수록된 법률 해설, 상담 사례, 사회조사 등에서 어떤 가족 문제가 부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자료의 선택과 배열이 가족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특정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그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체가 이미 형성된 가족 담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질적인 지식과 서사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가족 문제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63년『조선일보』기획 연재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을 대상으로 법적 판단을 비롯한 현실 자료와 소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가족 문제와 작품의 의미가 동시대의 규범에 따라 재구성되고, 가족 문제가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의미화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10] 1960년대『조선일보』는 가족 근대화와 여성의 지위를 둘러싼 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가족법과 호적제도의 개편, 가족의식과 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보도를 통해 법제상의 변화를 현실의 가족관계와 연결하고, 부부 중심의 소가족 규범과 관습적 가족 질서 사이의 긴장을 사회적 의제로 제시하였다.[11]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63년 4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이 기획 연재되었다. 이 연재는 법률상담·판결문·통계·사건 기사와 이미 발표된 소설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연재 안에서 결합하고 이를 상호 해석의 관계로 배

10) 권민자는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이 한국 소설을 매개로 현실의 가족 문제를 호출하고 이를 구민법과 신민법의 대비 속에서 재배치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 연재가 대중 독자로 하여금 현실의 가족 문제가 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인식하게 하며 문학 속에 형상화된 갈등을 통해 가족 문제를 다시 성찰하도록 만든다고 평가하였다. 권민자, 「김수영 문학에 나타난 주체의 구성 양상: 개인·가족·국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94-95쪽 참조.

11) 김혜경, 「박정희 체제하 '핵가족' 담론의 변화과정과 이원구조 연구:『조선일보』를 중심으로」,『사회와 역사』제82호, 한국사회사학회, 2009, 169-212쪽.

www.kci.go.kr

열하는 편집 방식을 취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 자료와 소설을 하나의 지면에 함께 배치했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 연재에서 소설이 동시대 가족 현실에 맞게 선택적으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살피고, 법적·사회적 판단과 기사 말미의 평가와 권고가 가족 문제를 공론화하면서도 그 해결을 개인의 관계와 감정, 생활 윤리의 문제로 수렴시키는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재를 살펴볼 때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필자가 지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집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고는 특정 필자의 의도를 추정하기보다 전 20회에 걸쳐 반복되는 자료의 선택과 결합, 평가와 권고가 신문 지면에서 만들어낸 편집적 효과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12] 법률상담과 판결문은 갈등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판정하고, 통계와 사건 기사는 가족 문제의 발생 양상과 사회적 유형을 제시한다. 반면 소설은 욕망·불안·수치·오해·체념·연민과 같은 감정이 발생하고 누적되며 갈등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따라서 소설은 현실 자료가 결과와 유형으로 제시한 가족 문제를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과정으로 구체화한다.

본고는 전 20회를 하나의 연속된 담론으로 파악하여 회차별 구성과 자료 배치의 관계를 검토하고 가족 문제가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어떠한 기

12) 1960년대 한국 신문은 오늘날과 같은 기사별 바이라인 관행이 일반화되기 이전으로, 정치·사회·경제면을 비롯한 상당수 기사와 기획물이 무기명으로 게재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1990년대 이후 기자별 바이라인이 정착되면서 점차 변화하였다. (안수찬, 〈기사 끝 바이라인, 이렇게 깊은 뜻이〉, 『오마이뉴스』, 2010.3.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34822 (접속일: 2026.10.15.)) 본고는 이 연재의 집필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1963년 당시 『조선일보』의 편집 체계와 주요 편집 책임자 및 필진을 함께 검토하였다. 당시 유건호는 편집국장(1962.12.17.~1963.12.31.), 선우휘는 논설위원 겸 편집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신동호 역시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이 연재의 집필자나 기획자를 특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www.kci.go.kr

준에 따라 해석되고 판정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식민지기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는 소설들이 1963년의 가족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가족법 시행 이후 법적 변화와 생활 현실의 간극이 신문 연재라는 형식 속에서 어떠한 독해의 틀로 재조직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60년대 신문 지면에서 소설은 법률 상담·판결문·통계·사건 기사 등과 결합하여 가족 현실을 읽는 독해의 준거로 기능하였으며, 그 의미 역시 작품이 발표된 문학사적 맥락에 고정되지 않고 1963년의 가족 현실과 규범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의 구성 원리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 연재는 각 회차에서 (1) 특정 소설을 호출하고, (2) 법률상담·판결문·통계·사건 기사 등 현실 자료를 병치한 뒤, (3) 이를 연결하는 평가와 권고를 제시하는 편집 구조를 공통적으로 따른다. 이러한 구성은 소설과 현실 자료를 하나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문제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설과 현실 자료의 배치 순서와 비중은 회차마다 다르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접속하고 이를 평가와 권고로 연결하는 구조는 전 회차에 걸쳐 반복된다. 이 장에서는 각 회차에 반복되는 자료의 구성 순서와 소설 및 현실 자료의 결합 방식, 회차별 현실 자료의 유형과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연재의 구성 원리를 밝힌다.

연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발표된 한국 소설을 1963년이라는 현재 속에 재배치한다는 점에 있다. 염상섭의 〈신혼기〉(1923년 초출 〈해바라기〉)와 현진건의 작품을 포함한 1920년대 작품들을 기점으로, 1930년대(이

www.kci.go.kr

광수·이효석·이상·계용묵·채만식), 1940년대(임옥인·김동리·최정희), 1950년대(정비석·김성한·강신재·황순원·유주현·안수길·이범선·김광식), 1960년대 초(손창섭·박경수)에 이르는 작품들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배열된다. 이는 서로 다른 시대의 소설을 동일한 현재의 문제틀 안에서 읽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예컨대 1회에서는 염상섭의 〈신혼기〉(1923년 초출 〈해바라기〉)를 1960년대 초의 신혼 갈등 사례와 연결하고, 기사 말미의 권고를 통해 소설 속 인물의 태도를 현재 독자가 따라야 할 지침으로 전환한다. 갈등의 유형은 일정한 반복 구조를 보인다. 제3자의 개입과 성적 일탈(2·4·12회), 가난과 생존의 압박(3·10·19·20회), 여성의 이동과 선택을 둘러싼 갈등(4·14·16회), 의심과 불신의 병리화(9·17회), 혈연·후처·의붓자녀를 둘러싼 가족 내부의 균열(11·15회), 출산과 가족계획(18회) 등이 회차를 달리하며 재등장한다. 이러한 반복은 이상적인 가족상을 제시하기보다는 균열과 위기를 축적하는 방식에 가깝다. 현실 자료의 유형은 회차에 따라 강조점에 차이를 보이지만, 여성법률상담소 사례, 이혼 판결문, 조사보고서와 통계, 사건 기사, 정신분석 이론과 임상 사례를 포함한 의학적·심리학적 자료, 전후 빈곤 담론, 주거 및 가족계획 정책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이때 핵심은 국가의 판단(법·제도)과 개인의 관리(감정 조절·심리적 적응)라는 두 축을 동시에 참조하도록 배치하여 독자 스스로 갈등을 관리하고 감내하도록 유도하는 형식을 취한다.

〈표1〉은 연재에서 호출된 소설과 현실 자료를 회차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갈등 유형이 서로 다른 작품과 자료를 통해 반복되는 양상, 현실 자료의 중심이 법률상담·판결문에서 사건·정신의학·정책·생활 실태로 이동하는 과정, 식민지기부터 전후에 이르는 작품들이 1963년의 가족 현실을 설명하는 자료로 재배치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연재에 호출된 스무 편의 소설 자체라기보다 1963년의 신문 지면에

www.kci.go.kr

서 이 작품들이 선택·요약·인용되고 현실 자료와 접속되는 방식이다. 스무 편 전체를 동일한 수준에서 작품론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각 회차에서 부각된 장면과 서술을 통해 전 20회에 반복되는 편집 원리와 독해 유형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과 현실 자료의 결합이 작품의 의미를 어떤 방향으로 선택·전환하고, 가족 문제에 대한 판단과 해결의 기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분석한다.

〈표1〉「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연재의 회차별 구성 및 분석

회차	연재 제목	게재일	언급 작품	현실 자료
①	「新婚記」는 白紙에서	4.14	염상섭, 〈신혼기〉(〈해바라기〉, 『동아일보』, 1923.7.18~8.26 / 단행본: 『신혼기』(『수선사』, 1948))	1962년~63년 여성법률상담소 이혼 상담 사례.
②	有情도 病인 양	4.21	이광수 〈유정〉(『동아일보』, 1933.10.1·12.31)	고황경·이만갑·이효재, 『서울시 가족조사 보고』,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58.
③	諦念과 服從의 女人像 「貧妻」들의 코	4.28	현진건 〈빈처〉(『개벽』, 1921)	CH.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Victor Palmé, 1874. / 서울 시내 전당포(약 30여 점포) 이용 실태.
④	愛稱 아닌 侮蔑의 代名詞 自由夫人 諸氏!	5.5	정비석 〈자유부인〉(『서울신문』, 1954.1.1~8.6)	1955년 8월 25일 서울지법 이혼 판결문(대학교수 남편과 탈선한 아내 사례).

www.kci.go.kr

⑤	女權伸張의 逆現象? 共謀의 「無明路」	5.12	김성한 〈무명로〉 (『서울신문』, 1950)	1963년 4월 17일 전남 무안 김연택 부부 위폐 제조 사건.
⑥	아내는 『이름』을 喪失 「안개」 속으로 사라지다	5.19	강신재 〈안개〉 (『문예』, 1950)	1963년 5월 7일 무용가 (백초) 김기순의 자살 사건.
⑦	道德以前의 「모랄」	5.26	이효석 〈화분〉 (『조광』, 1939)	1963년 5월 광주사세청장 안병선 사망 사건 및 5.16 이후 축첩 공무원 235명 파면 통계.
⑧	接待婦와 「날개」와 失樂園을 헤매는 群像들	6.16	이상 〈날개〉 (『조광』, 1936.9)	1960년대 초 보건사회부·서울시경 통계상 윤락 여성의 급증 및 기혼 접대부 실태.
⑨	愛情表現엔 多岐한 流動 「夫婦」는 믿고 疑心한다	6.23	계용묵 〈부부〉 (『문장』, 1939.7)	정신의학 담론(프로이트 정신분석) / 청량리뇌병원 의부증 사례.
⑩	孤獨한 現代人의 「드라마」 「曲藝師」의 生活	6.30	황순원 〈곡예사〉 (『문예』, 1951.5)	6·25 이후 주택난과 생계 불안 속에서 가족 전체가 생존 전선에 동원되는 도시 중산·하층 부부의 실태. 신촌 복덕방을 전전하는 30대 공무원 부부 사례.
⑪	피는물보다진하다지만 = 「後妻記」의 反省	7.7	임옥인 〈후처기〉 (『문장』, 1940.11)	1963년 7월 4일 서울 용산 이발사 부부의 의붓딸 학대 및 고아원 유기 사건.
⑫	「오버·액손」하는 『美風』 수수께	7.14	유주현 『자매계보』 (『동아문화사』,	1963년 7월 3일 『조선일보』 「인생안내」에 접

www.kci.go.kr

	끼의『姉妹系譜』		1953)	수된 경기도 안성 여동생 남편 동반 가출 불륜 사례.
⑬	凡庸 못따르는「피에로」假說의 奴隸「痴叔」	8.4	채만식〈치숙〉(『동아일보』, 1938.3.7~3.14)	1963년 6월 대구지법 미국 유학 뒷바라지한 아내 상대 박사 남편 이혼 소송 기각 사례.
⑭	새로운「아마존」族 抑壓과 分裂의「夫婦」	8.11	손창섭〈부부〉(『동아일보』, 1962.7.2~12.29)	베드루 정신병원에 내원한 김 모 강사 사례(무력한 남편과 아내의 통제).
⑮	人格 이전의「넌센스」矛盾이 걷는 洞口 앞길	8.18	김동리〈동구 앞길〉(『문장』, 1940.2)	1963년 8월 부산 낙민동 소실 여인 일가 자살 사례.
⑯	現代人最後의 浪漫	8.25	박경수〈하자〉(『사상계』, 1960.10)	여성법률상담소 사례(아내의 과거 폭로로 인한 파탄).
⑰	無視 당한 아내의「本意」「人脈」의 運命論	9.8	최정희〈인맥〉(『문장』, 1940.4)	청량리뇌병원 내원 사례(정서적 단절 속 이중생활에 빠진 30대 기혼 여성).
⑱	未練의 流産	9.22	안수길〈유산〉(『문학예술』, 1957.4)	가족계획운동과 보건소·산부인과의 제도화, 전차칸 표어 등 국가 정책과 사회 담론 확산 속에서 생활 여건을 이유로 유산을 고민·선택하는 중년 봉급생활자 부부의 산부인과 사례.
⑲	싫어도 겪어야할 喜悲劇「誤發彈」	9.29	이범선〈오발탄〉(『현대문학』,	6·25 이후 해방촌 판잣집에 거주하며 실업·

www.kci.go.kr

	의 季節		1959.10)	빈곤과 가족 붕괴를 겪는 서민 부부 사례. 피난과 귀향, 실업 끝에 행상으로 생계를 잇는 도시 하층 부부의 생활 실태.
完	남의 집도 내집 같아	10.6	김광식 〈213호주택〉 (『문학예술』, 1956.6)	불광동 후생주택에 거주하며 인쇄공으로 20년째 근무하는 K씨 사례.

3.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의 독해 방식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 연재에서 소설은 가족법 이후 새롭게 문제화된 부부 관계를 해석하고 판정하기 위한 독해 장치로 기능한다. 이 연재에서 규범은 선언의 형태로 직접 제시되기보다 소설과 현실 자료의 병치, 기사 말미의 평가와 권고를 통해 조직된다. 회차마다 성적 일탈, 생존의 압박, 가족 내부의 균열, 의심과 불신, 출산과 가족계획 등 서로 다른 갈등이 다루어지지만, 자료의 선택과 배열, 평가와 권고의 방식은 이를 하나의 판단 틀 안에 위치시킨다. 현실 자료가 가족 갈등의 책임과 정상·일탈의 경계를 제시한다면, 소설은 그 이면에 놓인 부부 사이의 감정과 갈등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연재는 원작의 여러 의미 가운데 현실 자료와 접속할 수 있는 장면과 인물의 태도를 선택적으로 부각하여 동시대 가족 현실을 해석하는 규범적 사례로 재구성한다. 가부장적·성별 규범이 반복되는 한편, 그것이 법적 판단, 사회조사, 정신의학 등 동시대의 권위 있는 언어와 결합하면서 가족 갈등을 설명하고 판단하

www.kci.go.kr

는 근거로 새롭게 조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편집적 재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작품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통한 작품 의미의 선택과 전환, 가족 갈등의 감정적 구체화와 관리, 구조적 문제의 생활 윤리로의 수렴이라는 세 측면을 살펴본다.

(1) 법적 판단을 통한 작품 의미의 선택과 전환

연재 초반부에서 법률상담과 판결문은 부부 갈등을 사적인 불화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복되고 공적으로 판정될 수 있는 문제로 조직한다. 이때 소설은 법적 판단이 대상으로 삼는 갈등을 구체적인 생활의 장면으로 제시하며, 판결문과 상담 사례는 다시 소설의 특정한 의미를 동시대의 규범적 문제로 부각한다.

1회에서는 결혼은 "契約"의 측면에서 보든 "宗教的儀式"의 측면에서 보든 "하나의 중요한 社會制度"이며 "運命共同體로서의 自覺과 實踐"이 필요하다고 설명된다. 이 서술은 결혼을 법적 계약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윤리적 관계로 이동시킨다. 서울 시내 예식장에서 하루 79쌍이 새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 여성법률상담소 상담 통계(424명 중 131명의 여성이 이혼 상담, 결혼 1~10개월 사이 여성 22명)를 제시함으로써 신혼 갈등은 사회적 현상이 된다. 염상섭 〈신혼기〉는 이러한 통계 위에 놓이며 신혼 갈등을 설명하는 서사적 판례처럼 기능한다. 특히 1923년『동아일보』에 〈해바라기〉로 연재되었다가 1948년 단행본에서 〈신혼기〉로 개제되었다는 사실을 기사에서 병기한 것은 이미 재명명된 작품을 1963년의 신혼 갈등을 설명하는 자료로 다시 연결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기사의 마지막은 "夫婦라는 새로운 身分으로서의 出發은 서로의 理解속에 거뜬한 마음으로 시작해야하는것, 그러므로 新婚記는 白紙위에 기록함이 마땅할것같다"고 맺는다. 이는 소설을 감상의 대상으로 두기보다 신

www.kci.go.kr

혼부부가 따라야 할 관계의 지침으로 독해하게 만드는 편집적 권고이다. 소설에 나타난 기억과 불신의 복합적인 갈등은 이 과정에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백지'의 생활 윤리로 수렴된다.

1회가 법률상담소 사례를 통해 갈등을 사회적 현상으로 포착했다면, 이후 회차들은 법적 판결을 통해 부부 갈등을 공적 판단의 대상으로 더욱 구체화한다. 4회는 판결문을 통해 정상과 일탈의 경계를 공적 판단의 언어로 확정하고, 13회에서는 대구지법의 이혼 소송 기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부부 갈등을 법정의 판단 가능성 속에 배치한다. 이러한 반복은 연재가 법을 직접 설명하지 않더라도 법적 판결을 통해 갈등을 사회적으로 판정 가능한 문제로 읽도록 독해의 방향을 조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은 제도적 장치에 머물지 않고 관습적 기대와 도덕적 판단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며 기사 말미의 권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4회에서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대학교수 남편과 혼인한 아내의 행위를 다룬 1955년 서울지법 이혼 판결문과 병치된다. 원작은 전후 소비문화의 확산과 여성의 사회적 이동, 욕망의 표출뿐 아니라 남성 지식인에게 관대하게 적용되는 성도덕과 부부 관계의 위선을 함께 드러낸다. 그러나 연재는 아내가 "大學敎授의 主婦로서 그 義務를 망각"했다는 판결문의 문구를 전면에 놓음으로써 소설의 복합적인 갈등을 주부의 의무 위반이라는 문제로 좁힌다. "自由夫人"을 "愛稱 아닌 侮蔑의 代名詞"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판결문의 법적 권위와 모멸의 표현이 결합하면서 '자유부인'이라는 부정적인 여성상이 형성된다. 그 결과 여성의 자유는 부부 관계에서 보장되거나 협의되어야 할 권리보다 가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욕망으로 재의미화된다. 연재는 이를 법적 판단에서 멈추지 않고 기사 말미의 권고를 통해 생활 윤리의 문제로 다시 수렴시킨다. "자신의 不幸이 結婚에서 온 것임을 確信하고그리하여 再出發로 새로운 幸福을 찾을 欲望과自信이 있다

www.kci.go.kr

면 떳떳이 離婚의 길을 택하"라고 말하면서도 제도적 선택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스릴"과 "허영"의 문제로 환원한다. 이는 제도적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듯하면서도 실제 판단의 초점을 여성 개인의 욕망과 태도에 두는 방식이다. 〈자유부인〉은 판결문이 규정한 일탈을 구체적인 서사와 감정으로 보여주고, 판결문은 다시 이를 여성의 자기관리와 부부 생활의 윤리를 요구하는 사례로 재구성한다.

13회에서는 미국 유학을 위해 헌신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남편의 소송을 기각한 대구지법 사례와 채만식의 〈치숙〉이 함께 제시된다. 〈치숙〉의 풍자는 식민지 현실과 지식인의 자기기만,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속물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복수의 층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연재는 작품이 풍자하는 여러 대상 가운데 아내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자신의 관념에 집착하는 남성 지식인의 태도를 부각한다. 그 결과 식민지 지식인의 정치적·윤리적 무능은 가족 내부에서 아내의 희생을 도구화하는 남편의 인격 문제로 전환된다. 연재는 이러한 태도를 "凡庸을 따르지못하는 〈피에로〉"로 희화화하고 반성을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원작의 식민지 현실과 지식인 비판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와 인격을 판단하는 문제로 선택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비판은 제도의 개혁이나 권리의 재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성과 인격, 태도의 변화를 해결의 언어로 제시하며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제기된 문제가 가족 내부에서 수행해야 할 개인의 윤리적 책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2) 가족 갈등의 감정적 구체화와 관리

법적 판결이 정상·일탈의 경계를 확정한다면, 사회조사와 정신의학은 아직 범죄나 이혼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욕망과 의심, 질투와 정서적 단절까지 해석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부부 갈등은 사후에 판정해야 할 위법 행

www.kci.go.kr

위에 머물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해야 할 일상적 관리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때 소설은 법적 판정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감정의 변화와 갈등의 과정을 구체화한다.

2회에서 다루어진 이광수의 〈유정〉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울시의 가족조사보고를 인용하여 조사 대상 가정의 상당수가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고 소개하면서도 경제적 불만이 잠재되어 있으며 "夫婦生活에있어서 가장위험한 사태는 第三者의 侵入"이라고 단언한다. 사회조사와 〈유정〉의 병치는 소설을 사랑과 희생의 서사가 아니라 부부 질서를 위협하는 감정의 불균형과 제3자의 개입을 설명하는 사례로 재배치한다. 이로써 제3자의 개입을 둘러싼 감정의 동요는 부부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인식하고 조절해야 할 문제로 읽히게 된다.

9회에서는 청량리뇌병원의 의부증 사례와 프로이트 정신분석 담론이 계용묵의 〈부부〉와 함께 제시된다. 질투와 의심은 관리되지 못한 감정의 과잉으로 설명되며 부부 갈등은 처벌보다 조절의 대상으로 재구성된다. "社會面에 오르는 近親殺傷"을 "사랑의 逆表現이라고는 단정할수없겠지만 寸數「0」의 夫婦사이의 愛情의 流動은 前近代에서 現代의 尖端까지가 競合하고있는 韓國社會의 경우 특히 격동이 심한것 같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전근대와 현대가 경쟁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규범 충돌의 반복 가능한 장면으로 재구성된다. 여기에서 정신의학은 법적 판단으로 포착되지 않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설명하는 또 다른 권위의 언어로 기능하며, 소설은 그러한 언어를 이해시키는 서사적 매개가 된다. 이러한 독법은 17회 최정희의 〈인맥〉에서도 반복된다. 〈인맥〉이 여성의 정서적 고립과 부부 사이의 단절을 섬세하게 서사화한 작품이라면, 연재는 이를 "無視 당한 아내의 本意(본의)"라는 문제로 읽으면서도 결국 감정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독해를 조직한

www.kci.go.kr

다. 기사에서 강조되는 것은 여성의 욕망이나 사회적 위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부부 관계의 안정성을 어떻게 위협하는가이다. 따라서 여성의 내면은 사회 구조 속에서 이해되기보다 부부 사이에서 조절되어야 할 감정의 문제로 읽힌다.

(3) 구조적 문제의 생활 윤리로의 수렴

연재는 성도덕과 가부장적 가족 질서, 혈연 중심의 가족 구성, 전후의 빈곤과 노동·주거 문제를 사회적 갈등으로 가시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권리의 확대나 제도 개혁의 요구로 전개되기보다 부부가 이해와 책임, 인내와 감내를 통해 조정해야 할 생활 현실로 재해석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가족 갈등의 해결을 제도적 변화보다 부부가 일상에서 수행해야 할 이해와 책임, 인내와 감정의 조절에서 찾는 방식을 '생활 윤리로의 수렴'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8회에서 이상의 〈날개〉는 보건사회부와 서울시경이 제시한 윤락 여성 증가 통계와 기혼 접대부의 실태 자료와 함께 호출된다. 전쟁과 사회 불안이 성의 윤락으로 이어진다는 설명과 함께 "「에덴」의 善惡果는 붉은 사과가 아니라 「이브」의 貞操였다"는 비유를 제시함으로써 「날개」를 성도덕과 가족 질서의 위기를 해석하는 틀 속에 위치시킨다. 소설에서 '나'의 무기력과 폐쇄된 방, 아내의 외출과 경제 활동, 두 인물 사이의 기묘한 의존 관계는 식민지 도시에서 주체가 경험하는 분열과 소외를 복합적으로 형상화한다. 아내의 행위는 남편의 제한되고 불안정한 시선을 통해 제시되어 그 의미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재는 이러한 서사적 모호성을 기혼 접대부와 윤락 여성에 관한 통계 자료에 접속시킨다. 기사는 실업한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는 기혼 접대부의 사례를 제시한 뒤 〈날개〉를 호출함으로써 작품 속 '나'의 무기력을 당대 가족경제의 현실과 연결하고

www.kci.go.kr

아내의 외출과 경제 활동을 성도덕의 문제로 재의미화한다. 그 결과 아내의 행위는 가족 질서를 위협하는 성적·도덕적 문제로 읽히게 된다. 이 병치는 통계 자료 속 익명의 여성 문제를 한 가정의 폐쇄와 불안, 남편의 무력감이 얽힌 관계의 장면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소설의 해석을 부부 성도덕의 위기라는 방향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날개〉의 도시적 소외와 주체의 분열은 가족의 '失樂園'을 설명하는 서사로 읽힌다. 실업과 생계의 압박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의 중심은 여성의 성도덕과 부부 생활의 유지로 이동한다.

6회는 무용가 백초 김기순의 자살 사건을 〈안개〉와 병치하면서 가족 안에서 여성의 존재가 소거되는 현실을 부각한다. 기사 제목인 "아내는 「이름」을 喪失"이라는 표현은 여성이 독립된 인격으로 호명되지 못하는 가족 질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한국의 부인들은 이름이 없다"라고 단언하며 여성을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아내'라는 가족 내 위치로 환원하는 현실을 문제화한다. 7회에서는 광주사세청장 안병선 사건과 축첩 공무원 235명 파면 통계를 제시하며 첩 제도를 "갖은 社會惡의 溫床"으로 규정한다. 〈화분〉을 통해 "道德以前의 「모랄」"을 논하면서 기존 가부장적 질서의 모순을 드러내지만 그 해결은 제도적 개혁보다 도덕적 성찰과 부부 생활에서의 태도 변화에서 찾는다. 두 회차는 여성 억압과 축첩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가시화하면서도 그 해결의 책임을 개인의 도덕성과 생활상의 실천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11회 〈후처기〉와 15회 〈동구 앞길〉은 모두 혈연 중심 가족 질서가 만들어내는 갈등을 다룬다. 〈후처기〉는 의붓딸 학대와 유기 사건을 병치하면서 후처와 의붓자녀를 둘러싼 가족 내부의 갈등을 제시한다. 기사는 이를 "自己世界의 確立과 그實踐은 주위에 대해 美德일 수 있음을" 역설하며 가족 내부의 갈등을 "神經質的執念보다는 良識위에선信念"으로 정당화한다.

www.kci.go.kr

〈동구 앞길〉 역시 첩 제도와 혈연 중심 질서를 "人格 이전의 人道에도 어긋나는 넌센스"라고 비판하지만, 이를 "韓國社會의 또 하나의 역설"이라고 설명하는 데 머문다. 혈연 중심 질서가 낳는 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면서도 그에 대한 대응은 개인의 양식과 도덕적 판단에 맡겨진다. 이처럼 가족 내부의 갈등은 공적 문제로 호출되면서도 그 해결은 개인의 도덕성과 인격에 귀속되며, 이러한 수렴은 빈곤·노동·주거를 다루는 회차에서도 반복된다. 이러한 독법은 3회 현진건의 〈빈처〉에서부터 확인된다. 〈빈처〉는 오랫동안 희생과 인내의 서사로 읽혀온 작품이다. 그러나 이를 "模範的斷念"이나 "獻身的服從"이 아니라 "스스로의 選擇과責任"의 문제로 다시 해석한다. 전통적 희생을 근대적 주체성의 언어로 대체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희생을 자발적 선택과 책임으로 재정당화함으로써 구조적 빈곤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전환한다.

19회에서 이범선의 〈오발탄〉은 해방촌 판잣집에서 실업과 빈곤을 겪으며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도시 하층 부부의 생활 사례와 병치된다. 원작은 전후의 빈곤을 전쟁의 지속적인 영향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개인과 가족이 함께 붕괴하는 현실로 형상화한다. 철호의 무기력과 가족 구성원의 파국은 전후의 빈곤과 불안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연재는 이러한 전후 현실 속에서 부부를 "生活戰線의 戰友"로 호명한다. 부부를 생존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계로 재정의한 것이다. 빈곤과 주거 불안은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지만 이에 대응하는 언어는 국가의 책임이나 사회적 권리의 요구보다 부부가 함께 견디고 협력해야 한다는 윤리로 제시된다. 이러한 독해는 전후 빈곤이 부부 관계에 가하는 압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현실을 국가나 사회의 책임보다 부부가 서로를 지탱하며 감당해야 할 생활의 문제로 다시 해석한다.

마지막 회차는 김광식의 〈213호주택〉을 기계화된 노동과 규격화된 후

www.kci.go.kr

생주택의 현실에 접속시킨다. 소설 속 김명학은 자신이 아내를 "마구 부리는 무지막지한 雇用主"는 아닌지 성찰하면서, "『…오늘의 社會는 人間의 勞動을 强制勞動으로 타락시켰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을 고통으로 아는 거야.』"라고 말한다. 이는 부부의 갈등이 노동과 주거의 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비판은 제도적 권리의 요구로 확장되기보다 부부 사이의 연민으로 봉합된다. 아내가 남편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구조적 압박을 견디게 하는 감정으로서 연민이 강조됨을 보여준다. 현실 사례인 후생주택 거주자 K의 인터뷰 역시 같은 방향을 취한다. 그는 생활에 쫓기면서도 출판사 민중서관 인쇄부에 근무하는 인물로, "『우리가 더 잘살기 위해서는 大韓民國社會가 더 機械化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한다. 현실 사례가 기계화를 더 나은 삶의 조건으로 수용하면서, 노동의 강제성과 주거의 규격화, 경제적 압박은 공론화되지만, 그 해결의 방향은 권리의 확대나 제도 개혁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미안함과 연민, 감내의 윤리로 봉합된다.

정리하면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은 서로 다른 시대의 소설을 1963년의 가족 현실 속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원작의 여러 의미 가운데 동시대 가족 문제와 접속할 수 있는 장면과 인물의 태도를 선택하고 이를 새로운 판단의 맥락에 놓았다. 법률상담과 판결문은 작품 속 갈등을 공적으로 판정 가능한 문제로 구성하고, 사회조사와 정신의학은 인물의 욕망과 불안, 질투와 단절을 관리 가능한 감정으로 규정하며, 사건 기사와 통계 자료는 성도덕과 가부장적 가족 질서, 빈곤·노동·주거의 문제를 현실의 갈등으로 가시화한다. 이처럼 연재는 가족 갈등을 법적·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면서도 그에 대한 실천적 해결은 감정의 관리와 이해·책임·인내·연민 등 부부가 일상에서 수행해야 할 생활 윤리로 제시한다. 소설과 현실 자료의 결

www.kci.go.kr

합은 가족 갈등을 공적 판단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부부의 감정과 태도, 생활상의 실천으로 이동시키는 이중적 독해 구조를 형성하였다.

4. 결론: 새로운 가족 질서 속의 부부

1960년 민법 시행은 친족·상속 질서를 법적으로 재편하려는 제도적 전환이었지만 그 변화가 곧바로 생활 규범으로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가족법 이후 새로운 가족 질서는 가족 내부의 다양한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는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가족을 둘러싼 갈등 역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할 문제로 부상하였다. 본고가 분석한 1963년『조선일보』기획 연재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은 이러한 변화가 신문 지면에서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연재는 가족 내부의 관계와 가족 질서의 원리, 생활 조건을 둘러싼 다양한 현실을 폭넓게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각각 독립된 가족 문제로 제시되지 않고 부부 관계의 유지와 균열이라는 하나의 해석 축 위에서 다시 배열되고 연결된다. 그 결과 부부는 가족 현실 전체를 읽고 새로운 가족 질서를 판단하는 중심적인 관계로 기능하게 된다. 여기서 부부 중심성은 당시 가족구조가 부부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재가 혈연과 가족 구성, 성과 재생산, 빈곤·노동·주거 등 서로 다른 가족 문제를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조직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부부 중심의 문제 설정은 연재의 구성 원리와 독해 방식에서 구체화된다. 연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시대의 소설을 1963년의 가족 현실 속으로 재배치함으

www.kci.go.kr

로써 문학을 부부 문제를 해석하는 준거로 전환하였다. 식민지기부터 전후에 이르는 작품들은 문학사적 계보의 일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가족 현실을 읽는 전형으로 호출되었다. 여기에 법률상담, 판결문, 통계, 사건 기사 등 현실 자료가 병치되면서 부부 갈등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재구성되었다. 2장에서 확인한 반복적인 편집 구조가 서로 다른 시대의 작품들을 1963년의 가족 문제와 연결하는 형식이었다면, 3장에서 살펴본 작품 의미의 선택과 전환은 그 결합이 소설의 독해에 개입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법률상담과 판결문이 갈등을 판정 가능한 사건으로, 통계와 사건 기사가 반복 가능한 사회적 유형으로 제시했다면, 소설은 그러한 갈등이 인물들의 생활 속에서 형성되고 누적되는 과정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욕망·불안·체념·연민을 서사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즉 서로 다른 지식 형식이 포착한 가족 현실을 소설의 서사적 시간과 감정을 경유하여 구체적인 생활의 경험으로 읽도록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설은 원작의 여러 의미 가운데 현실 자료와 연결되는 장면과 인물의 태도가 선택적으로 부각되면서 동시대 부부 관계를 판단하는 규범적 참조물로 재구성되었다.

둘째, 법적 판단, 사회조사, 정신의학, 성도덕과 가족 질서에 관한 담론 등 서로 다른 권위의 언어를 결합함으로써 부부 갈등을 해석하는 독해의 틀을 구축하였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가족 갈등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다. 법률상담과 판결문은 부부의 권리와 의무, 정상과 일탈의 경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사회조사와 정신의학은 법적 판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욕망과 불안, 의심과 단절까지 설명하고 관리해야 할 문제로 포착하였다. 이처럼 연재는 법적 판단에서 감정의 관리에 이르는 서로 다른 설명 방식을 연결하여 가족 갈등을 판단하는 범위를 확장하고 그 판단에 일정한 권위를 부여하였다. 신문 지면은 가족 현실을 해석하고 판

www.kci.go.kr

정하는 하나의 사회적 독해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셋째, 가족 갈등을 공적 문제로 제시하면서도 그 해결은 반복적으로 부부의 생활 윤리와 감정의 관리로 수렴되었다. 3장에서 검토한 성도덕과 혈연 중심 가족 질서, 전후 빈곤과 노동·주거 문제는 개인의 태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이었지만, 연재는 권리의 확대나 제도 개혁보다 이해와 감내, 연민과 책임을 해결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구조적 문제를 가시화하면서도 그 해결의 무게중심을 부부의 태도와 감정, 책임으로 이동시키는 공적 공론화와 사적 봉합의 이중적 독해 방식을 보여준다.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이 다루는 대상은 가족 전체였지만 가족 구성과 혈연의 원리, 성과 재생산, 빈곤·노동·주거를 둘러싼 갈등은 부부 관계라는 하나의 해석 축 위에서 다시 배열되었다. 이 연재의 기능은 가족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무엇을 가족의 문제로 읽을 것인지, 그 갈등의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구조적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소설의 구체적인 서사를 통해 조직했다는 데 있다.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은 소설을 가족 현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회적 준거로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가족 질서를 이해하는 하나의 독해 방식을 제시하였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한국의 부부 현실과 소설〉, 『조선일보』, 1963.

2. 논문과 단행본

권민자, 「김수영 문학에 나타난 주체의 구성 양상: 개인·가족·국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김금남, 「한국 여성운동의 주기별 조직 연대에 관한 연구: 가족법개정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연숙, 「대중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개인관계의 서사: 1950년대 후반 '독자사교란' 기획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2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6, 39-69쪽.

_____, 「전후 대중 담론에 나타난 관계지향의 욕망과 친밀성의 재구성: 1950년대 대중잡지의 '독자 사교란'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94호, 국어국문학회, 2021, 193-224쪽.

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혜경, 「박정희 체제하 '핵가족' 담론의 변화과정과 이원구조 연구: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82호, 한국사회사학회, 2009, 169-212쪽.

박용규·류지석, 「1960년대의 신문 독자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7권 5호, 한국언론학회, 2013, 396-422쪽.

안경희,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6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73-128쪽.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1.

윤후정·신인령, 『법여성학: 평등권과 여성』, 제3개정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0집, 상허학회, 2010, 397-454쪽.

_____, 『전향, 순수, 전후, 참여: 대한민국 문학의 형성과 매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www.kci.go.kr

2023.
홍순애·김연숙, 「1950년대 여성잡지『여원』의 가족법 담론과 젠더적 법의식」,『여성문학연구』제6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209-247쪽.

3. 기타자료

〈家庭法律常識 새 民法과 女性〉,『조선일보』, 1959.12.12., 4면.
문책, 〈14년과 女性 해방〉,『동아일보』, 1959.8.15., 4면.
〈民法上의 女性 地位〉,『동아일보』, 1962.7.20., 4면.
민병훈, 〈女性의 法的지위와 權利〉,『동아일보』, 1958.7.12., 4면.
〈變해가는 家族制度 慶熙大 法大의 調査 결과〉,『동아일보』, 1963.11.27., 6면.
안수찬, 〈기사 끝 바이라인, 이렇게 깊은 뜻이〉,『오마이뉴스』, 2010.3.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34822 (접속일: 2026.10.15.)
이태영, 「女性 自身을 爲하는 길」,『조선일보』, 1959.5.18., 4면.
이태영, 〈新民法과 女性의 地位〉,『조선일보』, 1958.12.28., 2면.
〈새 民法과 女性의 地位 ①〉,『조선일보』, 1959.11.29., 4면.
〈새 民法과 女性의 地位 ②〉,『조선일보』, 1959.12.6., 4면.
〈整理 1958年 여성〉,『경향신문』, 1958.12.20., 4면.

www.kci.go.kr

Abstract

Reading Family Reality through Novels - A Study on the Serialized Feature “The Reality of Korean Married Couples and Novels” in The *Chosun Ilbo* (1963)

Kwon, Min-Ja(Hallym University)

“The Reality of Korean Married Couples and Novels” (total 20 installments), serialized in the *Chosun Ilbo* in 1963, was a newspaper project designed to read and evaluate family issues through the narrative lens of fiction. By juxtaposing Korean literary works with practical sources such as legal consultations, Written Judgment, statistical data, news reports on cases, and the series presented marital conflicts not merely as personal experiences but as matters to be socially assessed and interpreted.

This paper analyzes how this serialization method invoked novels as normative references for interpreting and evaluating marital relationships, thereby concretizing the abstract rights and duties prescribed by family law into the ethics of everyday life. In particular, the series repositions novels—from Yeom Sang-seop to works spanning the colonial period to the early 1960s—as benchmarks for judging the realities of 1963, thereby actualizing the temporal order of literary history in a distinctive way.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seeks to elucidate how early 1960s newspaper media, mediated through literary narratives, organized and reconstructed marital norm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family law.

(Keywords: Family Law, Married Couples, Newspaper Serialization, Social Function of Literature, Reading)

www.kci.go.kr

논문투고일 : 2026년 8월 25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0월 13일
수정완료일 : 2026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18일

www.kci.go.kr